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도종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295

발의연월일: 2021. 4. 2.

발 의 자:도종환·김철민·서영석

송재호 · 안민석 · 유정주

이병훈 · 이상헌 · 인재근

임오경 • 양이원영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·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(이하 "지표조사"라 함)를 실시하여야 하며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.

그런데 매장문화재는 민족문화의 원형을 간직한 소중한 유산이며 국가는 매장문화재를 보호 및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는 만큼, 매장문 화재 관련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지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매장문화재 관련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매장문화재를 철저하

게 보호 및 관리하려는 것임(안 제6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국가 등에 의한 지표조사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는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수행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6조의2(국가 등에 의한 지표조
	사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
	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를
	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표조사
	를 실시할 수 있다.
	②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는
	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
	사기관이 수행한다.
	③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의
	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
	<u>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